

대전지방법원 2021. 1. 14 선고 2019나121191 판결 [사해행위취소등]

재판경과

대전지방법원 2021. 1. 14 선고 2019나121191 판결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9. 11. 19 선고 2018가단5319 판결

전 문

원고,피항소인 A 주식회사

피고,항소인 D

변론 종결 2020. 11. 19

판결 선고 2021. 1. 14

제1심 판결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9. 11. 19. 선고 2018가단5319 판결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의 원고에 대한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와 피고 사이에 생긴 소송총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와 E 사이에 2015. 6. 9. 체결된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25, 769, 144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5, 769, 144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주문 제1항과 같다.

이 유

1.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는, F 주식회사가 E에 대하여 가지는 대출금채권을 양수받아 꼬에 대하여 위 대출금채권을 가지는 것을 전제로, 피고에 대하여 위 대출금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E과 피고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매매 계약에 대한 사해 행위취소와 그에 따른 원상 회복으로 대출원리금 상당액의 가액배상을 구한다.

나. 그러나 갑 제 2, 3, 5, 6, 8, 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와 처제·형부 사이인 표이 2014. 12. 10. F 주식회사로부터 15, 000, 000원을 대출받은 사실(이하 위 대출금채권을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 원고가 2017. 9. 21. 위 회사로부터 이 사건 채권을 양수받은 사실, 그런데 원고가 제 1심 계속 중인 2019. 3. 11. C 유한회사에게 이 사건 채권에 관한 일체의 권리를 양도하였고, 그 무렵 위 채권양도사실을 E에게 통지한 사실, 이에 C 유한회사가 2019. 5. 16. 이 사건 소송에 승계참가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에 의하면 원고는 사해행위취소의 피보전채권으로 주장하는 이 사건 채권을 원고 승계 참가인

C유한 회사에게 양도하여 더이상 사채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와 전제를 달리한 원고의 이사건 청구는 나머지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2. 결론

원고의 이사건 청구는 이유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이와 결론을 일부달리한 제1심 판결은 부당하므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중 피고의 원고에 대한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김매경판사 김혜령판사 박성수

별지